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김 주 택

상지대 경상학부 회계학전공

E-mail : jtakim@mail.sangji.ac.kr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발달은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방법이 도래하였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율성 증대·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조세분야에서도 OECD,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기존의 산업 및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활동은 상거래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

달은 지난 수 천년 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인 중간유통단계인 상점을 매개수단으로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신의 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율성 증대·시장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중이며 조세분야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통일된 과세원칙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 1997년 미국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은 지구촌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OECD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의 문제 등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관련 조세문제는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개별국가의 과세체계와 세계국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기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국내외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고찰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란 미국의 국방예산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정부조약의 전자적인 처리와 그 운영에 대해 구상되었던 광속상거래 CALS¹⁾(CALS : Commerce At Light Speed)와 전자교환자료 EDI²⁾(EDI :

1) CALS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폐기 등 이르기까지 수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통의 표준을 사용하여 생산 성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내 혹은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관계의 모든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업, 개인, 정부간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EDI, CALS, E-mail, DB, 이미지 시스템, 바코드, BBS 등 모든 정보기술을 포괄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가상공간에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수집, 계약, 주문, 납품, 대금지불, 등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 소비자, 정부간 거래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계약, 생산, 구매, 재무, 주문, 납품, 대금지불, 수송, 행정, 서비스 등의 모든 업무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가상공간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교역이 가능하다. 재

2) EDI란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를 합의 된 문서표준(agreed message standards)에 의해서 작성하여 하나의 컴퓨터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현재는 사용자간에 각종 행정 및 상거래 문서를 서로 합의 된 표준을 사용하여 컴퓨터간의 직접통신에 의해 교환되는 시스템이다.

〈표 1〉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구 분	전통적상거래	전자상거래
유통경로	기업→중간상인(도·소매→최종소비자)	기업→최종소비자
거래장소	한정된 물리적 시장 및 점포	인터넷가상공간(사이버쇼핑몰등)
거래지역	한정된 일부지역	전세계(Global Marketing)
거래수단	물리적 장비 및 시설	컴퓨터, 통신기기
거래비용	토지, 건물등 대규모비용	서버 및 홈페이지구축비용 상대적 적은 비용
마케팅활동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마케팅	쌍방향 통신을 통한 1:1 상호적 마케팅
고객대응	고객불만에 대응 지역	고객불만에 즉시 대응
고객정보획득	시장조사 및 영업사원이 획득 정보의 재입력 필요	온라인에 의한 수시획득 재입력이 필요없는 디지털 데이터
결제수단	현금, 수표, 신용카드등	전자화폐, 전자수표 및 전자자금이체등
거래상 문제점	다량필요	대폭축소되거나 불필요

화와 용역의 판매·운송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되어 도·소매상의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되며 유통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소비자의 정보비용이 대폭 감소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³⁾.

2.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을 상거래에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성 자료에 의하면 라디오, TV, 컴퓨터, 인터넷의 5천

만명 사용자 도달기간이 라디오의 경우 38년, TV는 13년, 컴퓨터는 17년 인터넷의 경우는 5년이 걸렸다고 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게 되면서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들도 앞다투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2>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용자는 2002년에 약 2,600만명에서 2년 후인 2004년에는 약 3,100만명으로 증가하고 8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기간의 아시아태평양의지역의 인터넷사용인구의 증가율은 61.2%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터넷인구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3) EC전문과정,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전자상거래지원센타, 2002, p.11

〈표 2〉 국내 및 세계 인터넷인구 비교

(단위 : 만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한 국	인 터 넷 인 구	1,589	2,216	2,648	2,921	3,196	3,415	16.5
	전체인구 대 비	33.6	46.4	55.1	60.4	65.5	69.4	-
아시아·태평양		6,427	9,073	12,039	15,608	19,650	24,078	30.2
전 세계		39,972	52,222	65,107	77,482	87,718	97,671	19.6

〈표 3〉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구 분	1999	2000	2002	2003	예측기관
국 내 (원)	9조 1,948억	17조 4,167억	48조 5,000억	78조 7,000억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980억	2,180억	9,210억	1조 7,150억	LG경제연구원
전 세계 (달러)	1,110억	2,180억	7,340억	1조 3,170억	IDC

또한 2002년 말 16세 이상 인터넷이용 상위 국가는 미국(13,640만명), 일본(3,390만명), 중국(2,250만명), 독일(1,990만명), 영국(1,680만명), 캐나다(1,540만명), 그리고 우리나라가 7위로 1,520만명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 국가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다⁵⁾.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인구가 증가하면 전자상거래의 이용인구와 이용금액도 증가하게 되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시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인터넷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지식정보기반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자상거래가 국가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연도별 국내 및 세계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장규모를 나타내고 있다⁶⁾. <표 3>에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의 예측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LG연구원이 하였지만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4) IDC "Worldwide & Korea Internet Market Forecast and Analysis", 2001. 7

전자상거래관련 주요통계자료, 한국전자거래
진흥원, 2002, p.16

5)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통계자료, 전계서, p.17

6) 전자상거래 지원센타 연차보고서, 한국전자
거래진흥원, 2001, p.11

규정하고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2002년과 2003년의 증가율이 약 6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LG 연구원에서도 동기간의 약 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제환경이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필수수단이 되는 인터넷의 이용자들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의 증가로 보아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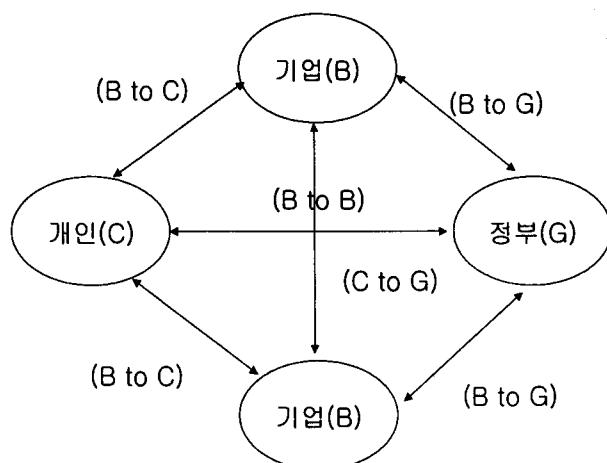
3. 전자상거래의 유형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거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내 거래,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소비자와 기업간의 거래, 정부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기업간(B to B :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품개발, 원자재 조달, 재정, 제품의 운송, 금융업무의 처리 등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전체전자상거래의 약 80%는 이러한 B to B의 거래가 차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주로 무역,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B to B에서의 거래는 첫째, EDI를 통한 기업과 공급업자간의 상품의 발주로 구매비용의 절감 및 생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둘째, 직접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전자자금 이체 등이 있다.



〈그림 1〉 전자상거래의 네가지 유형

(2)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소비자간(B to C : 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가상상점을 통한 전자소매가 전자상거래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B to C는 1996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 2~3년간 인터넷인구가 급증하면서 2000년 10월을 기준으로 이러한 온라인⁷⁾ 쇼핑몰의 수가 2,000여개를 육박하고 거래 규모도 전체 소매거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케익, 와인,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각종방법으로 제공하는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홈 쇼핑, 홈 뱅킹, 온라인 광고와 인터넷을 통한 교육 및 오락과 인터넷쇼핑몰(Internet Shopping Mall)등이 해당된다.

(3)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간(B to G : Business to Government)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정부기관간의 전자적 거래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초보단계이지만 최근 각국 정부가 자국내의 전자상거래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부문의 전자구매 환경을 조기에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조달예정대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고 회사들은 전자적으로 이에

참여하거나, 세금부과나 징수 민원서비스 등 정부나 공공부문기관의 행정서비스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업무가 된다

(4)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정부와 소비자간(G to C : Government to Consumer)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 및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험 지급이나 각종의 세금징수, 면허교부, 보조금혜택 등의 각종 행정정보 및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4. 주요국가의 조세정책동향

(1) 미국

미국은 인터넷이 가장먼저 보급된 국가로서 세계인터넷 인구의 80%, 인터넷 쇼핑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린턴대통령은 1997년 7월 「지구촌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였다.⁸⁾ 이 기본계획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5개의 기본원칙과 인터넷교역을 무관세화하고 내국세 신설을 금지하는 하는 제안을 포함하는 9가지의 권고 안을 제시하고 있다. 5개의 기본원칙은

7) 디지털재화를 인터넷과 같은 전자장치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는 거래를 온라인(on-line)거래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주문만 받고 재화를 종래의 우편배달 체계에 의하여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거래를 오프라인(off-line)거래라 한다.

8) United States Executive of the President. "A Frame 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D.C.,The White House, 1997, 7
<http://www.whitehouse.gov/AH/New/Commerce/read.html>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민간부문이 주도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부 관여가 필요한 경우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이고 단순한 법적 환경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9가지의 권고안 중에서 조세분야와 관련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둘째, 기존의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사이의 조세차이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국제조세원칙에 따라 조세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가 상거래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조세제도는 단순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조세관련 집행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무 관세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도출 및 국제적인 통일 규범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98년 10월 미국연방정부와 미국의회는 인터넷 무관세법(Internet Tax Freedom Act)를 제정

하고 승인하여 미국내의 각 주(states)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2) 유럽연합(EU)의 본(Bonn)선언

1997년 7월 독일과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정보네트워크(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본(Bonn)선언⁹⁾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조세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조세가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에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전자상거래를 차별하지 않는 조세 중립성을 강조하여 인터넷교역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문제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는 동의하나 내국세부문에서는 공식적인 조세원칙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나 소득세등 직접세위주인 반면 유럽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중심으로 조세체계가 이루어져 이 경우 인터넷에 대하여 자유무역지대로 설정될 경우 유럽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정보에 대하여 “bit” 단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트세(bit tax)와 같은 새로운 조세도입을 반대하였고¹⁰⁾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왜곡

9)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CEC), Global Information Networks Conference, 1997

10) 비트세(bit tax)를 반대하는 이유는 ①이종 과세가 될 수 있으며 ② 공급가액이 아닌 비트 단위로 부과하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③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유럽보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관세, 정부 개입의 최소화, 민간의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하고 있으나 유럽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아직 미국보다는 열세에 있으므로 과세권의 확보와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개입하여 조정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 OECD

OECD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 중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으며 1998년 10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경 없는 세계: 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실현(A Borderless World :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였다.

소비세는 소비자국과 세원칙에 따르고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컨텐츠는 과세목적 상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필요한 경우 대리납부 및 자진신고납부제도 등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2001년 2월 10일 OECD는 회원국들이 호스트서버가 설치돼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논란을 거듭해온 전자상거래과세 문제가 일단락 됐다¹¹⁾.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사고 팔더라도 호스트서버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전자상거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재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과세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등 제3자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경우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술수준, 활용수준 등이 아직 초보단계로서 조속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제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복잡한 조세제도상의 문제점도 선진국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전자서명법((1999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였다.

①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정부는 1999년 2월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 전자 서명법

정부는 1999년 2월에 전자문서의 안전성

11) 한국경제신문, 2001. 1. 12
[http://hksearch.hankyung.com/cgi-bin/
kedsearch.cgi](http://hksearch.hankyung.com/cgi-bin/kedsearch.cgi)

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도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¹²⁾를 도입하였고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¹³⁾.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의 확보, 효율성 있는 업무의 처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III.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전자 상거래의 확산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조세문제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조세징수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의 조세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원칙은 1998년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12)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OECD 각료회의에서 제 원칙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¹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다른 국가로 이전되어 매매하는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 국가간의 조세에 의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소프트웨어를 미국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의 과세와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미국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고 또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과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Jeffrey Owens(1998)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세제 및 세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

14)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원칙은 1998년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제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중립성(neutral)의 원칙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는 전자상거래 상호간에 중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한다.
- ② 효율성(efficiency)의 원칙은 납세자의 협력 비용과 정세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③ 명확성과 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의 원칙은 과세와 관련된 조세부과의 시기, 장소, 조세의 산정방법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④ 유연성(flexible)의 원칙은 과세체계는 기술적 산업적 여건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고 전제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전통적인 세무조사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② 개별납세자 확인이 어려워지며 ③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지고 ④ 거래의 중개 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을 파악하기 곤란 함 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① 직접예금(direct deposit)에 의한 납세협력 및 ② 징세비용의 절감 ③ 전자세무신고에 의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경제성 제고 ④ 사회보장세 등 기타 봉급에 대한 세금의 자동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주의 편의 제고 ⑤ 통관절차의 능률화 과세정보의 교환의 용이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세제에 있어 공급장소의 개념, 조세협약에 있어서의 고정사업장의 개념, 소득의 특성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¹⁵⁾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쟁점은 전자상거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기존의 조세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조세행정 측면과 소비세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실정세법과 관련된 것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점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납세자는 공급자이며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생산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과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생산지국과 소비지국 모두에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중과세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¹⁶⁾.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¹⁷⁾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재화의 수입시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국내사업자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있으므로 국내사업자는 가격경쟁에

15) 이만수, 서병우,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제23권 제2호, 2000, 8

16) 김주택외, 세무회계, 신론사, 2002, p.655

17)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서 뒤질 수가 있게된다. 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⁸⁾.

전자상거래에서 국제거래에서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B to B)는 사업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상호대조를 통하여 세원의 감시가 가능하지만 기업과 소비자(B to C), 소비자와 소비자간(C to C)의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대리납부제도에 의한 세원보족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전자상거래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1%(2000년 예산기준)로 가장 많은 세목이므로 문제인식이 특히 필요하다.

(1) 공급장소의 문제점

소비지국과세원칙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공급장소(재화 등이 소비되는 장소)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공급장소의 확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화 등의 공급장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장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공급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된다.

반면에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가 된다.¹⁹⁾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생산지국과세방법과 소비지국과세방법이 있다. 생산지국과세방법은 재화가 생산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비지국과세방법은 생산지국이 재화를 수출할 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주고 수입국은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와의 소비세부담이 같아지도록 수입국의 세율에 간접세를 과세하게 된다. 소비지과세원칙은 자원배분에 대해 중립적인 반면 행정비용이

18)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9)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②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급지 과세원칙은 자원 배분에 대해 비중립적인 반면 행정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된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직접세에 있어서는 생산지국과세방법을 채택하고 간접세에서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여 국경 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을 인정하고 있다.

재화 등이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고 국외거래인 경우 오프라인을 통하여 유형재화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화가 수입되는 것과 같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의 공급자들은 디지털재화를 전자적 기계장치를 통하여 소비지국에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업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기존의 공급장소 규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외국 서비스의 국내공급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과세장소 및 사업장에 대한 개념정립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비거주자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세원의 포착이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형의 재화나 용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하여 결제하되 전통적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하는 오프라인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인도결제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는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용역으로 취급되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화를 용역으로 수입하거나 용역을 재화로 수입할 수도 있게된다. 예를 들면 CD나 소프트웨어같이 전자적으로 구매되어 우편으로 배달되는 재화의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만일 똑같은 상품이 전자적으로 다운로드 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같이 동종의 재화와 용역이 오프라인거래에서는 과세에 포함될 수 있고 온라인거래에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별하는 기준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디지털가능한 재화의 과세여부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소프트웨어 영화 등이 재화로 수입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 과세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표 4〉 디지털 가능한 재화의 과세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공급	국외수입
소프트웨어	과세	과세
영화	과세	과세
음반·비디오	과세	과세
신문·잡지·관보·통신·전자출판·도서(도서에 부수된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	면세	면세

* 전자출판물이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음반 비디오 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²⁰⁾.

(3) 대리납부제도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용역은 그 성격상 수입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자(면세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이러한 대리납부제도는 면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나 비사업자(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

다. 그렇다고 하여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 세부담 없이 수입한 용역은 세부담을 한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보다도 가격면에서 크게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사업자는 국외의 용역공급자보다 겨경쟁이 뒤떨어지게 되어 과세의 중립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므로 이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2. 소득세의 고정사업장문제점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OECD의 조세조약에서 제5조에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라고 규정하여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20조에는 비거주자가 국

20) 부가가치세법 제12조① 7, 시행규칙 제11조

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사업장²¹⁾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국내의 비거주자와 외국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징수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외국에 고정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이 없이도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개념의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외국의 기업과 고객을 상대로 직접 거래를 하여 소득을 얻는 국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유용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A라는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한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A라는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1) 고정사업장이 조건으로는 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고 ② 지리적 항구적인 면에서 고정성이 있어야하고 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만일 A법인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품을 선전하고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컴퓨터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서버가 고정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조세행정적인 측면

조세행정은 납세자를 확인하고 과세대상 거래와 소득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당해 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결정하여 공평과세와 실질과세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는 모든 거래가 전자화, 암호화되어 거래내역의 확인과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소득금액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조세의 공평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으로 과세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에서는 신원파악을 기초로 개인에게 부과하여 할 조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하여 소득자의 신원파악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과정이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는 웹사이트의 주 소만으로는 신원확인이 매우 곤란하다.

둘째, 과세의 균거자료획득이 어렵다.

전자상거래는 구매요청, 대금결제, 송달 등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권자의 균거자료 획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방법으로도 이용 될 수 있다. 특히 국외거래에서 균거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한 정보교환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거래가 조세피난처(tax haven)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균거자료에 의한 조세부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과세 협력자로부터 과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협력을 하는 중개자가 필요하다. 분리 과세되는 소득의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서는 사업자들의 과세협력의 중개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로 유통단계에서 중간상들의 기능을 생략하게 되어 과세협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징세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다.

IV.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의 대응방안

1. 부가가치세의 공급장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ATT가 정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소비되는 장소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중립성 유지 측

면에서는 소비지 과세원칙으로의 합의하고 있어나 소비지과세 원칙에 또 다른 문제점은 소비지국별로 서비스의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²²⁾.

전자상거래에서는 국외의 공급자들은 인터넷을 소비지에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장소의 개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국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과세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거래장소 또는 공급장소로 과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재화의 공급장소는 문제되지 않으나 용역의 공급시는 소비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공급장소의 개념과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OECD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B to B거래에서는 기업의 사업거점 관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둘째, B to C거래에서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를 소비지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2) YTN, 2002-06-20

OECD는 2002년 6월 2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63차 재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공급지가 아니라 소비지에서 과세하게 되므로 소비지국별로 서비스 가치를 달리 평가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B to C의 경우는 소비지의 확인문제가 매우 어렵지만 B to B의 거래는 기존사업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용역을 수입하는 소비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비지에서 효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②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에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는 가능한 동일한 것을 재화보다는 용역으로 수입을 하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이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에 일관성이 결여 될 때 기업들은 재화를 서비스로 하여 판매하거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게된다.

법 제 34조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

를 하는 것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용역에 한정하고 일반과세사업자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용역을 공급받아도 과세사업자는 과세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에게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B to C거래는 소비세 과세에 관한 원칙들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인 문제와 조세행정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 to B거래는 현행의 대리납부의무를 적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해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매출세액과 대리납부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이 동시에 발생되어 납부세액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사업자나 국가의 조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과세소득에 대한 유효한 정보수집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소득세의 고정사업장의 문제

전통적인 소득세의 과세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었다. 즉 소득의 발생지와 소득자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소득과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나 소득의 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원

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나 웹사이트를 한곳에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OECD모델조약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고 이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등의 서버(server)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사업자가 보유한 서버는 특정 기업에 의하여 일정장소에 고정되어 운영되고 그 서버를 통해 계속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영업활동에 제공되는 서버도 설치장소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서버도 휴대용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기타 장소적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고정성보다는 고정성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약하여 서버의 포함 여부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특정 컴퓨터 서버에 위치한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의 서버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소유한 서버상의 공간을 임차하여 자산의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제공하는 서버상의 웹사이트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ISP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결합된 무형재화에 불과하며, 고정성과 사업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웹사이트(web site)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넷째, 사업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여야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할 것인가이다.

OECD모델조세조약에서는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용인 또는 종속대리인이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인이나 종속대리인의 활동이 당해 국가에 상주하지 않고 원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또는 사무기기의 자동화로 근무 인원수의 정도에도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4. 조세행정측면의 대응방안

전자상거래는 거래자 신원확인의 어려움, 장부기록의 전산화 등으로 조세행정측면으로 적정한 과세하기 위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조세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의 확인과 과세근거자료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며 조세행정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정부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국외사업자(non-resident supplier)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을 유도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란에 전자상거래라고 기재하며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합법적인 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EU의 전화서비스, 케나다의 출판물판매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호주 국세청(ATO)이 제안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예상되는 탈세 및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호주기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적절한 등록절차와 전자 화폐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전자상부의 완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B to B 거래에서는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고 B to C거래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와 같이 정한 규모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만 국외사업자의 등록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부여로 인한 등록절차의 간소화·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withhold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에 해당되어 조세징수에 사업자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결제금융기관이 과세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책임이 공급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 옮겨지게 되며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의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조세징수의 협력자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요약

정보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은 지난 수 천년동안 인류가 행하여 왔던 상거래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방식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는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조세의 징수방법과 절차 그리고 세무행정분야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 세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급 장소의 개념의 정립과 디지털제품을 재화로 인식할 것인지 또는 용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서는 고정사업장과 같이 특별한 경제활동의 거점이 없이도 상품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국외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을 유도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부여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결제금융기관이 과세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가 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예견된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세계나라와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수일, 전자상거래의 성공을 위한 전략수립 단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전자거래지원센타
- 김주택외, 세무회계, 신론사, 2002
- 나승성, 전자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 노영훈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1999
- 박상욱,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전자거래지원센타, 2001
- 이만수외, 전자상거래의 조세제도 연구, 산업경영연구, 2000
- 전자상거래 지원센타 연차보고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1
- 전자상거래관련 주요통계자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 한장석, 부가가치세 정해, 광교, 1997
- 한휘선,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한국고시회, 2001
- 홍명교외, 전자상거래와 조세, 한국조세연구원, 2001
- Owens, Jeffrey, Taxation in Cyberspace, 한국조세연구원, 개원5주년 기념심포지엄, 1997
- OECD, Internet and Electronic Commerce Issues for Permanent Establishments, 1997
- OECD, The Tax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1997
- US Executive of the President :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

A Study on Taxation Electronic Commerce

Kim, Ju-Taek

Abstract

It is only 9 to 10 years since the use of internet became commercial. But electronic 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Though the ratio of electronic commerce compared to total commercial transaction is still low, it is certain that electronic commerce will be the major form of transactions in the future.

In July 1, 1997, United States made a public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to set up Internet to be a duty free zone and declared to play the trigger role in getting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 July 8, 1997, EU also adopted "Bonn Declaration"-minimiz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imposing no new tax on electronic commerce.

Focusing the international trend, we need to develop the tax policy that is suitable for our country situation as soon as we can. To be able to do that, we must make an endless effort like selecting professionals, making new administrative part and supporting the research.